

| | |
|--------------|--------------------|
| 의안번호 | 제 102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18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

| | |
|-------|---------------|
| 발 의 자 | 오영탁 의원 등 7인 |
| 발의연월일 | 2018년 11월 21일 |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

(오영탁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02 |
|----------|-----|

발의연월일 : 2018년 11월 21일

발의자 : 오영탁, 이수완, 윤남진,
김기창, 박병진, 연종석,
이옥규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하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 다.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라.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 환경산림국 수질관리과와 협의

라. 입법예고 : '18. 11. 15 ~ '18. 11. 20(의회홈페이지)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수의 조사)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하대수층 분포상황(지층 및 지질구조 등) 및 수질·수위분포
2.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3. 지하수개발·이용계획 및 이용실태
4. 장래 지하수 활용계획
5. 지하수 보전구역의 설정
6. 기타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조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범위, 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 및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경우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도 공보 등에 고

시하며,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영 제40조에 따라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도 소속의 실·과장

2.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하수법]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개발·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3. 5. 2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1.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⑨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역의 안정적인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8. 6. 8.>

⑩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전문개정 2011. 5. 30.]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② <생 략>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3. 10. 30.>

② <생 략>

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 ⑤ <생 략>

⑥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

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 ⑩ <생략>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① 삭제 <2009. 4. 3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3. 10. 30.>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4.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

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3. 10. 30.>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7. 12. 29.>[전문개정 2001. 12. 19.]

[먹는물 관리법]

- 제13조(환경영향조사) ①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